

B.Startup 솔루션 리빙랩(Solution Living Lab) 참여 스타트업 모집공고문

(재)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부산 소재의 혁신 스타트업이 보유한 솔루션을 시민주도적 검증으로 보다 성장성 있는 스타트업의 솔루션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해 운영하는 『B.Startup 솔루션리빙랩(Solution LivingLab)』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3년 05월 22일

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명 : 『B.Startup 솔루션리빙랩(Solution LivingLab)』

리빙랩(Living Lab)

- 우리말로 '생활 실험실'이란 뜻의 리빙랩은 시민이 주도적으로 생활 속 문제를 발견, 해결책을 설계하여 직접 문제해결까지 해나가는 사용자 주도 개방형 혁신 모델

□ 주최/주관 : 부산광역시/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

□ 지원기간 : 23년 5월 ~ 12월

□ 지원규모 : 4개사

□ 지원대상 : 부산 소재의 7년 이내 스타트업

□ 사업내용 : 스타트업이 지닌 애로사항(제품개발/커뮤니케이션 등)을 시민참가단의 피드백을 통해 시장 친화적이고, 사용자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로 고도화 할 수 있도록 지원

- (매칭데이 개최) 스타트업의 제품·서비스 소개 및 시민참가단 매칭

- (제품·서비스 실증의견 제공) 스타트업↔시민참가단 매칭을 통해 제품·서비스 체험 및 개선 아이디어 제공

- (서비스개선비 지원) 스타트업 서비스개선비 지원(기업당 1,500만원)

- (최종점검) 스타트업의 서비스개선 결과 최종점검 및 성과공유회 실시

□ 모집기간 : 23.05.22.(월) ~ 06.12.(월) 18:00까지

□ 모집규모 : 4개사

□ 모집대상 :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7년 이내 스타트업

※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 / 법인 기업 : 등본상의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

※※ 신청가능 창업(설립)일 기준 : 2016년 5월 21일 이후

□ 모집분야 : 시민참가단이 직접 실증할 수 있는 소비·생활분야의 스타트업

분야	서비스 예시
도시안전	· 여성/어린이 등을 위한 안심위치서비스 App 등
건강/보건 (헬스케어)	· 개인 생체신호 측정 및 건강정보 수집 웨어러블 기기 및 맞춤형 건강관리 App 등
문화/관광 (로컬비즈니스)	· 위치기반 관광지 스토리텔링 오디오 가이드, 증강현실을 활용한 관광지 안내 App 등
복지 (웰페어)	· 영유아 수면 모니터링 서비스, IoT 기반 스마트 휠체어 등
환경 (클린테크)	· 쓰레기 수거관리 서비스, 대기 환경 모니터링 기기 등
교육 (에듀테크)	· 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(스마트패드, 전자칠판) 등
기타	· 기타 도시문제 해결과 관련된 서비스 일체(스마트시티)

□ 신청방법 : [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](#)(알림마당→공지사항)에서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(daeun@ccei.kr)로 제출

※ 이메일 제출 시 제목표기 : [기업명(대표자명)] 솔루션리빙랩 접수

□ 제출서류

구분	서류 항목
필수서류	참가신청서, 사업계획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발표자료 (자유 PPT형식) 각 1부
해당기업만 제출	법인등기부등본, 특허 등록/출원, 투자유치 등 기타 실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 각 1부

□ 프로그램 추진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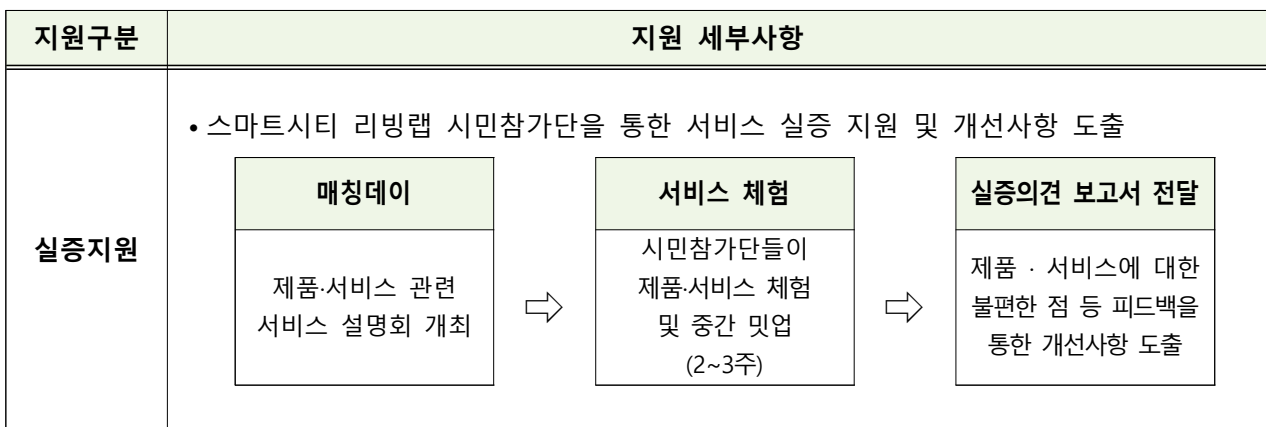


※ 상기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지원 프로그램 소개

가. 시민참가단 실증지원

- 참가인원 : 30명 내외
- 실증기간 : 2~3주 내외(서비스에 따라 유동적으로 진행 예정)
- 진행 절차(안)



※ 상기일정은 내부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나. 스타트업 실증개선비 지원

- 지원기간 : 8월 ~ 10월
- 지원내용 : 시민참가단의 실증의견을 토대로 스타트업의 제품 및 서비스 실증개선비 지원(1,500만원 내외)
- 지원항목

지원구분	지원 세부사항		
실증개선비	· 실증의견을 바탕으로 제품 ·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업화자금 지원 · 기업당 최대 1,500만원 지원(서비스개선제안서를 바탕으로 최종심의 후 지원금 확정)		
	구분	주요내용	집행기준
	시제품 제작	· 자체 개발이 힘들 경우, 외부 업체를 통한 시제품 제작(외주용역)	배정예산 범위 내 (공급가액)
	재료비	· 제품/서비스 개선에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등 무형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	
	마케팅비	· 제품/서비스 및 기업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등의 광고 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	
	특허권/무형자산 취득비	· 창업아이템과 직접 연관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, 등록 등에 소요되는 비용	
	서비스 이용료	· 제품/서비스 개발과 연관된 서비스(BaaS, 클라우드 등) 이용료	
	창업활동비	·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기업 임직원 국내여비 및 회의비	지원금의 최대 5% 사용 가능
※ 상기 지원항목은 내부 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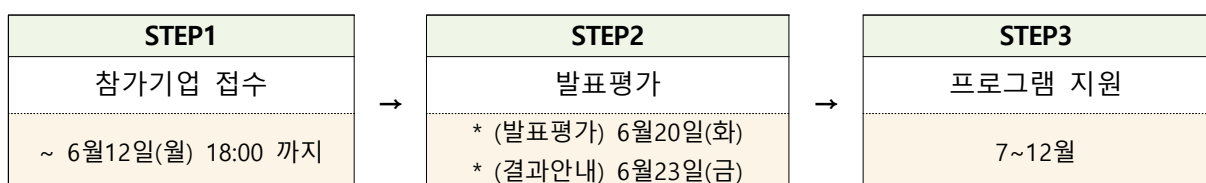
4 평가 개요

□ **평가 방법** : 외부위원으로 3인 이상 구성하여 기업이 제출한 서류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별 15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

□ 평가 절차

- 발표평가는 발표 · 질의응답 포함 15분 내외로 진행되며, 대표자 발표를 원칙으로 함

□ 평가 일정



※ 모집규모에 따라 발표 전 서류평가가 진행될 수도 있으며,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평가항목

구분	평가항목	주요 내용
발표 평가	성장성 (30점)	· 시장진출 및 성장 가능성 · 기술 사업모델의 고도화, 사업 확장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·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성
	사업모델 혁신성 (30점)	· 신산업·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술사업 모델의 독창성 및 차별성 · 기술 사업모델이 산업 및 시장을 선도할 가능성 ·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확장 가능성
	기술성 및 파급성 (20점)	· 핵심제품 기술성, 지식재산권 보유현황, 유사기술 대비 경쟁력 등 · 해당기술의 시장파급효과, 경제적 기대효과, 고용창출 효과 등
	적합성 (10점)	· 솔루션리빙랩 참가 적합성 (생활밀착형 스타트업, 시민참가단의 체험 및 실증 가능 여부 등)
	팀 역량 (10점)	· 기술 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팀 구성 및 역량 · 기업의 사업 참여 의지 등

5 유의 사항

- 참가기업당 1건의 아이템만 참여 가능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
 - 선정 취소·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(선정 이후 기간 포함)
 -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내용은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비밀유지
 -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 - 본 챌린지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
 - 상기 공고사항은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사업 선정 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성과조사와 참가기업들의 후속 지원 등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가입(5년 정보제공동의 포함) 필수
 - 협약체결 시 가입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며, 미 가입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☐ 신청제외 대상

- 신청서가 미비하거나 신청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-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또는 기업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(기업)
 - *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

6

관련 문의

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육성팀 담당자

 (전화) 051.749.8930  (이메일) daeun@ccei.kr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	창업아님
		이종	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	창업아님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부도/파산 - 2년 초과			창 업	
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			
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	-		창 업	
법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	창업 기본요건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폐업 3년 초과	창 업
			폐업 3년 까지	창업아님
	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창업아님
		동종전환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-	창 업
		동종창업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창업아님
	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	창업아님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	창업아님
이종		창 업		

※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
※ 동종의 범위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
※ 과점주주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
※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(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) : ①2020.10.8.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

- "개인사업자 설립일이 '20.10.8. 이전이면서,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"한 경우 "창업"으로 판단

②영 시행(2022.6.29.)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